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29호 2014. 7. 24. (목)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36호 정선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1
- 정선군 규칙 제123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 정선군 규칙 제1238호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17
- 정선군 규칙 제1239호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규 칙

정선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24일

정선군 규칙 제1236호

정선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군의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
6. “주요업무계획”이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한 주요 시책사업 및 공약사업
 나. 군수 지시사항으로 군 중요 정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주요사업

7.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란 주요업무계획을 평가하기 쉽도록 시책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여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2장 성과관리 및 평가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4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 대상) ① 성과평가 대상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소속기관(이하 “실·과·소”라 한다)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군 업무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제8조(주요업무계획)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 ② 평가대상기관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9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2월말 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성과과제의 현황,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 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성과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중간평가는 생략하거나, 추진진도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특정평가)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실·과·소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

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정평가의 결과를 특정평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자관리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성과평가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

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 개최시에는 위원별 소관분야를 지정하고 분야별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부의 안건 등을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제2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감사)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자체평가위원회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군정 업무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계획 및 2014년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주요업무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정 이 유

-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24일

정선군 규칙 제123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필요 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군본청”을 “군 본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안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8호 및 제40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5호 중 “관보등”을 “관보 등”으로 한다.

제5조제4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8호 중 “기타 건설방재과”를 “그 밖의 안전건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1호 중

“장단기계획”을 “장·단기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6호 중 “양어장등”을 “양어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의3제6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의4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또는지방보건사무관”을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자로”를 각각 “사람으로”,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를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하 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9호, 제35호, 제62호 및 제78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의3 중 “지방 시설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장의 직급
(제19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정선읍사무소	정선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고한읍사무소	고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사북읍사무소	사북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신동읍사무소	신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화암면사무소	화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복지사무관
남면사무소	남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여량면사무소	여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북평면사무소	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계면사무소	임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복지사무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u> <u>시행규칙</u>	<u>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본청의 실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조에 따라-- ----- ----- ----- <u>필요한</u> -- -----.
제2장 <u>군본청</u>	제2장 <u>군 본청</u>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 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 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 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문화 관광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 장·안전건설과장·동계올림픽 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 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 축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 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환 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 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 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세무회계과장·문화관광 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 안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 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정책과

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9. ~ 39. (생략)
40.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41. ~ 54. (생략)
55. 법령집, 관보등 관리
56. ~ 75. (생략)

제5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생략)
40. 기타 여성관련 업무
41. ~ 73. (생략)

제13조(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략)
28. 기타 건설방재과 소관 토목사업
29. ~ 40. (생략)
41.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장단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
-----.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
9. ~ 39. (현행과 같음)
40. 그 밖의 -----
41. ~ 54. (현행과 같음)
55. ----- 관보 등 --
56. ~ 75.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생활지원과) -----
-----.

1. ~ 39. (현행과 같음)
40. 그 밖의 -----
41. ~ 73.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건설과) -----
-----.

1. ~ 27. (현행과 같음)
28. 그 밖의 안전건설과-----

29. ~ 40. (현행과 같음)
41. ----- 장·

<u>기계화</u> 수립 42. ~ 59. (생 략) 60. <u>기타</u> 각종재해 및 재난에 관한 사항 61. ~ 65. (생 략) 66. <u>양어장</u>등 유수인용 허가 67. ~ 74. (생 략) 75. 하천대장 관리 및 <u>기타</u> 수자원관리상 필요한 사항 76. ~ 91. (생 략) 제14조의3(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1. (생 략) 62. <u>기타</u> 교통운수 행정에 관한 업무 63. ~ 72. (생 략) 제14조의4(동계올림픽지원단) 한 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9. (생 략) 30. <u>기타</u> 체육 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제15조(소장 등) ① 정선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u>단기계화</u> - 42. ~ 59. (현행과 같음) 60. <u>그 밖의</u> ----- ----- 61. ~ 65. (현행과 같음) 66. <u>양어장</u> 등 ----- 67. ~ 74. (현행과 같음) 75. ----- <u>그 밖의</u> ----- 76. ~ 91.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도시건축과) ----- -----. 1. ~ 61. (현행과 같음) 62. <u>그 밖의</u> ----- --- 63. ~ 7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동계올림픽지원단) -- ----- -----. 1. ~ 29. (현행과 같음) 30. <u>그 밖의</u> ----- ----- 제15조(소장 등) ① ----- ----- 또는 <u>지방보건사무관</u>----- -----. ② -----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별정직(6급상당 또는 7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정선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 기술지원과장을 둔다.

② (생략)

제18조(소장 등 사무분장)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략)

29. 기타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0. ~ 34. (생략)

35. 기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6. ~ 61. (생략)

62. 기타 식량작물 지도에 관한

-----제12조에 따른
-----사람으로 -----
---사람으로 -----

-----규정에 따라 공중
보건의사 중에서-----

③ -----

-----임기제 --
-----.

제17조(하부조직) ① -----

-----위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소장 등 사무분장) ① ---

--.

1. ~ 28. (현행과 같음)

29. 그 밖의 -----

30. ~ 34. (현행과 같음)

35. 그 밖의 -----

36. ~ 61. (현행과 같음)

62. 그 밖의 -----

사항 63. ~ 77. (생 략) 78. <u>기타</u>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79. · 80.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의3(소장의 직급) 상하수 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 는 <u>지방 시설사무관</u>으로 보한 다. 제18조의4(소장의 사무분장) 상 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생 략) 40. <u>기타</u> 상 · 하수도, 분뇨처리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41. ~ 46. (생 략) 제19조(읍장 · 면장의 직급) 「지 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읍 · 면에 두는 읍장 · 면장 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 63. ~ 77. (현행과 같음) 78. <u>그 밖의</u> ----- --- 79. · 8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소장의 직급) ----- ----- -----<u>지방시설 사무관</u>-----. 제18조의4(소장의 사무분장) 상 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현행과 같음) 40. <u>그 밖의</u>----- ----- 41. ~ 46. (현행과 같음) 제19조(읍장 · 면장의 직급) 「지 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 -----.
--	--

개 정 이 유

- 본청 실·과·단장 및 읍·면장의 복수직렬을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활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본청 실·과·단장 복수직렬 조정(안 제3조)

구 분		자치행정과장	도시건축과장
현 행	직 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조 정	직 급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읍·면장 복수직렬 조정(안 제19조, 별표)

구 분		직 급
현 행	9읍·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 정	7읍·면	현행과 같음
	화암·임계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복지사무관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24일

정선군 규칙 제1238호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을 “지방세법 기본통칙 또는 지방세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 지방세법령”을 “지방세 법령”으로 한다.

제132조제3항 본문 중 “영 제130조의3제1항”을 “영 제79조제1항”으로 하고, “해당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자료처리부에 기재하고 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176조의6제3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7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35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35조의3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135조의4를 삭제한다.

제135조의5의 제목 “(신고 및 납부처리)”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부과부서의 장은 미신고 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의6, 제135조의7, 제135조의8을 삭제한다.

제135조의8 다음에 “제2절” 앞에 “제1절의2(제135조의9부터 제135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35조의9(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의10(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의11(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0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0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분 할신고납부”를 “분할신고 납부”로 하고, “분할신고납부처리부”를 “분할신고 납부 처리부”로 하고,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147조 다음에 “제3절의2(제147조의2부터 제147조의3까지)”를 신설한다

제3절의2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제147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7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8의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절(제159조부터 제16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절(제164조)를 삭제한다.

제9절을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의2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68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illegible]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8호의2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관 할 세 무 서	세 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9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세 부과징수 규칙</u> 제126조(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조회) ①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 다. 1. 행정자치부장관의 <u>지방세법기 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u>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u>지방세법령</u>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략) 1. ~ 4. (생략) 제132조(균등분 주민세) ①·② (생략) ③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 는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으로서 <u>영 제130조의3제1항</u>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u>해당연도에</u>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u>해당연도에</u> 대한 균등	<u>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u> 제126조(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조회)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u>지방세법 기본통칙 또는 지방세 법령</u>----- ----- ----- 2. <u>지방세 법령</u>----- -----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132조(균등분 주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영 제79조제1항</u>----- -----<u>해당 연도</u>----- -----<u>해당 연도</u>----- -----

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5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35조의3(대장 정리)

①·② (생 략)

<신 설>

-----.

제132조의2(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자료처리부에 기재하고 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
----- 법 제84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세 기본법」 제50조 -----

-----.

④ (현행과 같음)

제135조의3(대장 정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35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
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비
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
여 처리할 수 있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
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
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
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주민세(종업원분) 과
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
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삭 제>

<삭 제>

수 있다.

제135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부터 제99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제103호서식까지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의5(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미신고 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

④ (현행과 같음)

제135조의6(특별징수) ①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 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 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

다.

④ (생략)

<삭제>

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3제1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 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 징수한다.

- $\text{소득금액} \times \text{제한세율} = \text{산출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text{소득세·법인세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 \text{지방소득세}$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⑤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의7(보통징수) ①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101호부터 제104호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35조의8(대장 정리) ①군수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삭 제>

<삭 제>

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35조의9(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 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 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 설>	<u>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④ <u>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⑤ <u>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
<신 설>	<u>제135조의10(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u> <u>제135조의11(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02호서식의 개인지방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0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u>

제2절 재산세

제141조(연세액 신고납부)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2조(자동차세 분할신고납부) ① 군수는 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분할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세

제141조(연세액 신고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2조(자동차세 분할신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분할신고 납부-----
-----분할신고 납부처리부-----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절의2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제147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신 설>

제6절 도축세

제159조(특별징수의무) ①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특별징수의무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영수증 검인)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은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7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8의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삭 제><삭 제>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8절 도시계획세

제164조(대장비치) ①세무공무원
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과 비
과세·감면대장을 비치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 및 비과
세·감면대장과 병행한다.

②도시계획세만 비과세 또는 감
면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 사업소세

<삭 제>

<삭 제>

<삭 제>

개 정 이 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시행)에 따른 강원도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시군합동직무 조례안(도세정과 - 5951, 2014.5.14)”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상위 법령개정으로 법조문 정비(안 제132조, 제135조의2, 제141조, 제142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135조의5)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관련조문 신설(안 제135조의9, 제135조의10, 제135조의 11 및 별지 서식)
- 자동차세(주행분) 규정 보완을 위한 관련조문 신설(안 제147조의2, 제147조의3 및 별지 서식)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24일

정선군 규칙 제1239호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를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절차와 그 밖에”를 “절차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대장 및 그 밖에 서류의 정리)”를 “(대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징수결정결의와”를 “징수결정 결의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후징수결정”을 “사후징수 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수납자료”를 “개별 수납자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고지서발행번호”를 “고지서 발행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법인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후단 중 “납기전징수”를 “납기전 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재발급신청”을 “재발급 신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경락관련서류 또는 소득세납부 영수증”을 “경락 관련서류 또는 소득세 납부영수증”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별지 제21호”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OCR 미소인처리내역”을 “미소인 처리내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를 “법 제8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납기전징수”를 “납기전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군세감액결정을 한”을 “군세 감액결정액 통지를 받은”으로, “군세환급금내역”을 “군세환급금 내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군세환급금지급 동의서”를 “군세환급금 지급동의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군세환급금충당결의서”를 “군세환급금 충당결의서”로 한다.

제30조 중 “군세환급금통지서”를 “군세환급금 통지서”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군세환급금의 환부절차)”를 “(군세환급금의 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납세자”를 “중소기업 납세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고지서송달불능”을 “고지서 송달불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재지등”을 각각 “소재지 등”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담보이행시기”를 “담보 이행시기”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있는 것 또는”을 “있거나”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압류등기촉탁”을 “압류등기 촉탁”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부동산등의 압류효력)”을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채권으로서”를 “채권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압류등록촉탁하는”을 “압류등록 촉탁하는”으로 한다.

제56조 본문 중 “별지 제42호서식및”을 “별지 제42호서식 및”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별지 제37호서식및”을 “별지 제37호서식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령후”를 “수령 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납소인정정”을 “수납 소인 정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별지 제37호서식및”을 “별지 제37호서식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를 “최고하거나”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함께법 제2조제1항제28호”를 “함께 법 제2조제1항제28호”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공매보증금으로서”를 “공매보증금으로써”로 한다.

제68조 중 “입찰규정또는”을 “입찰규정 또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재산으로서”를 “재산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매수권리포기”를 “매수권리 포기”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제2차납세의무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매대상재산”을 “공매대상 재산”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인도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별지 제65호서식”을 “인도한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별지 제6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수거부내용”을 “인수거부내용”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매대행중지”를 “공매대행 중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매대행중지조치”를 “공매대행 중지조치”로,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공매대행 중지요구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감사원심사청구”를 “감사원 심사청구”로 한다.

제87조 중 “공매대행의뢰”를 “공매대행 의뢰”로, “공매대행업무”를 “공매대행 업무”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읍·면·동장의 행방불명확인”을 “읍·면장의 행방불명 확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3일전 까지”를 “3일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반우편 송달부

[illegible]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미소인 처리 내역
(수납일자 : ~)

세 목 미소인사유	연도	월	동	과세번호 수납기관	기분	수납일 소인일	납기	본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방위세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수납금액	납세의무자	처리결과

※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군세 기본조례</u>			<u>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u>
	<u>부과·징수규칙</u>			<u>부과·징수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절차와----- -----.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 ----- ----- 일반우편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생략)	제9조(대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② (생략)	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6		③	----- ----- ----- ----- -----징수결정 결의와 ----- -----	

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군금고의 수납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번호 :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2.·3. (생략)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사후징수 결정-----
----. ----- 개별 수납 자료-----.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고지서 발행번호-----

-----.

2.·3. (현행과 같음)

4. ----- 납세자번호,----- 납

인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
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6. (생 략)

7. 납부기한 : 고지분의 경우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로 부과하는 군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
으로 하되, 납기전징수 등 긴
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9. (생 략)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
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
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
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
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
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생 략)

제13조(납세고지서의 재발급)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의
훼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
세고지서의 재발급신청을 받는

세자번호-----
----- . ---- 「개인정
보 보호법」 제3조-----

-----.

5. 6. (현행과 같음)

7. -----

-- . -----

----- 납기전 징수 -
-----.

8. 9. (현행과 같음)

10. -----

-----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

--.

11. (현행과 같음)

제13조(납세고지서의 재발급) ①

- 재발급 신청-----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재발급 납세고지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신고납부 군세의 처리)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법인장부·검인계약서·증여 등 무상취득계약서·사용승인서·판결문·경락관련서류 또는 소득세납부 영수증 등 세액계산 관련 증빙서류

③·④ (생 략)

제15조(군세의 수납)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작성하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고납부 군세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경락 관련서류 또는 소득세 납부영수증-----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군세의 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21호서식 -----

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
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17조
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
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
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
지 제11호서식의 OCR 미소인처
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
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한
경우 연 4회이상 납세의무자 소
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

-----.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
리) ① -----

----- 미소
인 처리내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1조--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

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5조(세입마감) ① 제10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① (생략)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세감액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군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8조(군세환급금의 지급대상

체 없이 -----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세입마감) ① -----

----- 납기전 징수 -----

-----.

② -----

----- 다음 연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세 감액결정액 통지를 받은 ----- 군세 환급금 내역 -----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군세환급금의 지급대상

자)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군세환급금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군세환급금충당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 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군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

제2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세환
급금 충당결의서-----
-.

제30조(군세 환급금의 통지 등) -
----- 군세환급
금 통지서-----

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
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군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생략)

② 군금고는 군세환급금의 환급
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
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
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
다.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군수가 납
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
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중소기업납세자는 주무부서
에 등록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협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한다.

④·⑤ (생략)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
유예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

-.

제31조(군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환급
금 지급확인통지서-----
-----.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납세자-----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
유예 등) ① -----

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징수유예등 정리부(법 제8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정리부)를 작성·정리하고, 징수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등”이라 한다)의 재조사를 하여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의 재조사를 하였으나 소재지등이 확인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부과철회를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를 한 후에 년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을 확인하여야 하

--- 고지서 송달불능-----

-----.

② -----

---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
-----.

③ -----
----- 소재지 등-----
- -- 소재지 등-----

-----.

④ -----
----- 소재지 등 ----- 소재지 등-----

며, 소재지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과결정을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 (생 략)

② 납세자가 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납세담보로써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세를 징수하거나 환가금액을 군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군세충당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 그 밖에 유가증권,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3. (생 략)

③ (생 략)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점검시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그 밖의 -----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담보 이행시기-----

유예, 담보의 변경, 담보의 보완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채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선박의 압류등기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50조(부동산등의 압류효력) ① · ② (생략)

제5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생략)

②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

-----.

제43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있거나-----

-----.

제4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
----- 압류등기 촉탁-----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채권으로써 -----

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촉탁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6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제57조(교부청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

③ -----
----- 압
류등록 촉탁하는-----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
----- 별지 제42
호서식 및 -----

-----.

-----.

제57조(교부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7호서식 및 -

-----.

③ 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후 납입하거나 계좌입금방식에 의거 수입금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후에 배당금 지급처의 배분착오 등으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금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하고 채납액정리부·수납소인정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58조(참가압류) ①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
----- 수령 후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수납 소인 정정-----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참가압류) ① -----

----- 별지 제3
7호서식 및 -----

-----.

②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군세총액이 압류재산의 예상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60조(공매공고)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의해 공매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와 함께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2조(매각예정가격조서)

① ~ ⑥(생략)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응) ① 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무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최고하거나 -----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공매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함께 법 제2조제1항제28호 -----

-----.

제62조(매각예정가격조서)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응) ① 공매보증금으로써

-.

② (생 략)

제68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
지 제5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
당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69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매각
결정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다
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
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
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
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
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②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
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
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

----- 입찰규정 또는 -----

-----.

제69조(매각결정통지서) ① ----

-----.

----- 재산으로써 -----

-----.

② -----
----- 인정
되는 -----
-----.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수권
리 포기-----

-----.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

차) ① (생 략)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76조(배분계산서) 채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채납자에게 별지 제61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 4. (생 략)

제78조(공탁) (생 략)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생 략)

②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 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제76조(배분계산서) -----

-----.

1. -----
----- 제2차 납세의무자-----

-----.

2. ~ 4. (현행과 같음)

제78조(교부금전의 예탁) (현행과 같음)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매
대상 재산-----

-----.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생 략)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별지 제6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79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도한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별지 제65호서식의-----.

③ -----

----- 인수 거부내용-----
--.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

----- 공매대행 중지-----

----- . -----
----- 공매대행 중지조치----- 공매대행 중지요구서-----.

1. ~ 7. (현행과 같음)

8. -----

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
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심
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제87조(협지사항 등) 세무공무원
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
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
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
우에는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
복명서 또는 읍·면·동장의 행
방불명확인에 따라 처리한다.

③·④ (생략)

③ (생략)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
련서류 등을 갖추어 회의개최 3
일전 까지 위원들에게 이를 서
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감사원 심사청구-----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협지사항 등) -----

공매대행 의뢰-----

----- 공매대행 업무-----

-----.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읍·면장의 행방불명 확인-----

-----.

③·④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3일전까

지-----

-----.

개 정 이 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2152호, 2014.1.1 시행)에 따른 강원도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시군합동직무 조례안(도세정과-5951, 2014. 5.14)”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현행 법령·규칙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6조, 제78조)
 - “보통우편”을“일반우편으로, 제목“(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 정비
- 법령의 명칭 및 법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제4호)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로 법령 및 조문 정비